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31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조문의 구성체계	16
3.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정의규정(안 제2조)	17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24
다. 맞춤형교육 지원 및 담당교원(안 제6조 · 제7조)	27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안 제8조)	30
마. 실태조사(안 제9조)	32
바. 부칙	3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7.

3. 회 부 일 : 2025.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느린학습자에게 초·중·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느린학습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안 제2조).
-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학교의 장에게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느린학습자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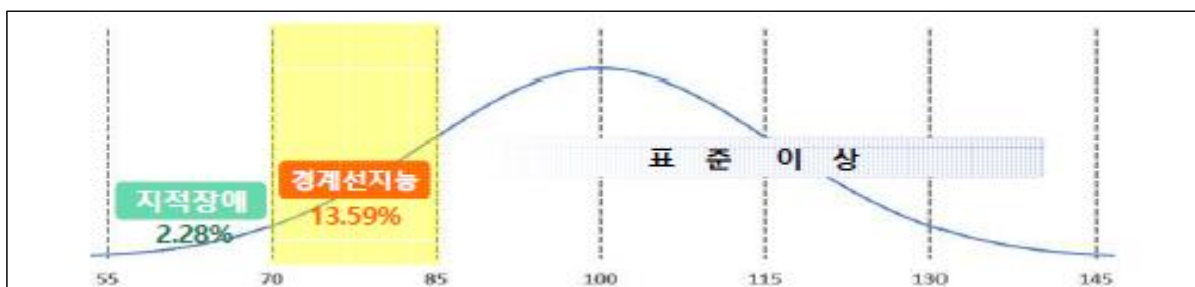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제안 배경과 입법필요성

1) 느린학습자 및 관련 규정 현황

- ‘느린학습자¹⁾’ 또는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71-84)²⁾으로 인식되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는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내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 국민 대상의 실태조사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상 전체 인구의 약 14%로 약 697만명³⁾으로 추정되고 있음⁴⁾.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

- 1) 느린 학습자는 DSM-IV 기준 'IQ71~84 사이의 경계선 지적 기능에 해당하며 적응행동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언어, 인지, 학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을 말함(임소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중의성 중심 메타언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4.8, p7).
- 2)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 기준
- 3) 우리나라 총 인구 수(5,129만 명/'24.3.통계청) 대비 환산 시 약 697만명 규모이며, 초·중·고 학생 수(576만명/'23.교육기본통계) 기준 약 78만명
- 4)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23년)은 약 3.6%의 학생이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석되었고, 중학생('24년)은 3.02%의 학생이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석됨.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⁵⁾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중 아동은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이나 사기 등의 범죄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전 생애주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⁶⁾,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을 마련하여 영유아단계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명시적으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⁷⁾, 2016년 「초·중등교육법」 제28조⁸⁾에 따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6) SBS NEWS(2025.8.21.) “경계선지능 동창 피어 컨테이너 살게 하고 대출 강요해 착취”, 경향신문(2025.8.20.) “경계선 지능 동창생 임금 떼먹고 대출금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에이블뉴스(2025.8.19.)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계선 지능 여성의 현실,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경계”
 경향신문(2023.4.17.)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찌나”
 한겨레신문(2022.8.15.) “한반에 2~3명 ‘경계선 지능’...조기 진단·개입 시급”

7) 2026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포함함으로써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⁹⁾, 2022년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¹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학습장애¹¹⁾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¹²⁾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14439호) 제안이유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발전 속 여전히 학교 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외면되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 학습부진 학생으로 귀결되고 있는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이 바로 그들임. (중략)

이에 학교 통칙 규정에 학습능력향상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학습능력향상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28조).

- 10)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별표]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

또한, 2021년에는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¹³⁾¹⁴⁾.

-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¹⁵⁾에 따라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서비스 등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¹⁶⁾, 그 대상이 전체 경계선

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학습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미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8. 학습장애

- 13)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 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4)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추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전국 188개소)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 15)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6) 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2」, 2025.4.

지능 아동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현황¹⁷⁾ 등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¹⁸⁾, 이후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127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2026년 1월 기준)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총 145개¹⁹⁾)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5%(123개)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임.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전담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예산(2025년 기준 16억원)을 편성·운영중임.

2) 관계기관 의견 및 해외 입법례

-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신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느린학습자를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학생의 낙인효과 및 자기효능감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느린학습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

17) 참고자료2

18) 서울시는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기도 함.

19) 기초자치단체 112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5곳, 교육청 16곳

하게 규정하고,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실시 등이 「기초학력보장법」 등의 지원 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 지원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신중검토)

- 느린학습자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표·기준, 조례 등이 시도별로 상이하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증가, 낙인 효과 등 우려
 -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느린학습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 제정 법률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 및 중복 지원 우려
- 법률안이 제정되더라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느린학습자 조기 발견 등에 한계가 있음

(일부수정)

- 느린학습자 대다수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성격장애, 정서·행동문제,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제정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필요

□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²⁰⁾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조기진단·교육·직업 활동 등 전반적인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교육, 독일은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6.

<외국의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일본]

-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은 통상의 학급에서 실시하면서 장애에 따른 특별지도를 통급지도교실에서 실시하는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인으로, 지적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학습장애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지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하며, 학습장애인의 지도시간은 연간 10시간~28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독일]

- 독일의 돈보스코 직업학교 및 직업 교육훈련소는 경계선지능인 자폐등 가벼운 장애가 있는 16~25세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내 상공회의소, 산림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과 연계하여 비장애인이 2~3년 걸릴 교육을 재학생들에게 3~4년간 느리게 교육하고 있음.
-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며, 10명 이내의 소그룹별 지도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재구성

3)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느린학습자의 조기발견 및 실태파악 곤란,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해 부족 및 지원기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²¹⁾,

21)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

제정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에서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면서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누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성인기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대학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도에 세종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학부모 중 72.7%, 교원 중 56.6%가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로 설계, 직업교육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무역량(인지, 사회성 등)으로 성인기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는 취업 및 근로 활동 유지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으며,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습득이 미흡²²⁾하여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²³⁾.

□ 이처럼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가 겪는 복합적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데, 동 제정안의 경우 지원 대상을 학령기로 한정하

22) 경계선지능인 청년 203명 조사 결과, 직업교육 40.4%(82명) 다음으로 자립생활훈련교육 24.1%(49명)을 희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 p 7).

23)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 pp 6~7

고 있는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기 교육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하고 있는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느린학습자의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학습장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을 제외한 느린학습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법」 또한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있어 법의 적용 기본 범주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지정(제7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법」 또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²⁴⁾.

□ 이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 중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4) 특히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담당교원의 부족 문제와 증원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24억 3,300만원, 2031년 240억 8,400만원 등 향후 5년간 1,161억 2,300만원(연평균 232억 2,5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하는바, 제정안 심사시 재정적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33	-	-	-	-	33	6.6
센터 운영 (안 제8조)	22,250	22,695	23,149	23,612	24,084	115,790	23,158
실태조사 실시 (안 제9조)	150	-	-	150	-	300	60
합계	22,433	22,695	23,149	23,762	24,084	116,123	23,225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따라서 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므로 함께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의원	소관
137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교육위원회
302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	보건복지위
3115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	보건복지위
329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	보건복지위
466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보건복지위
789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보건복지위
8004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	보건복지위
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보건복지위
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	교육위원회
12721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	교육위원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2.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 하에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느린학습자 및 맞춤형교육의 정의(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5조),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 및 담당교원 지정(안 제6조 및 제7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문의 구성체계]

본칙	
제1조 목적	제8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제2조 정의	제9조 실태조사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부칙
제6조 맞춤형교육 지원	제1조 시행일
제7조 맞춤형교육 담당교원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규정(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느린학습자”와 “맞춤형교육”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2. “맞춤형교육”이란 느린학습자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검토의견

가) 느린학습자

- ☐ 현재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가 부재한 상황으로, 제정안은 느린학습자를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으로 대강의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71-84)으로 인식되는데, 느린학습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느린학습자로 선정될 경우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느린학습자의 정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경계선 지능인(학생)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제출된 법률안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취지 주요 법률안 정의규정 비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경계선 지능인 관련 주요 조례 정의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한편, 동 제정안은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법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가 중요 사항으로 보이는데, 동 제정안의 경우 기존의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느린학습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의 경우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고 있음.

[입 법 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8. 학습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일반적으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는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71-84)으로 인식되는데, 제정안에서

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느린학습자”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제정법의 적용대상이 협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동 제정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보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느린학습자를 선정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입법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느

린학습자를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학생의 낙인효과 및 자기효능감 저하 등이 우려되며, 느린학습자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 학습지원대상학생에 선정되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 후단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 (신중검토) 세종, 부산, 대구, 제주, 강원, 경남, 경기, 광주, 울산
- 느린학습자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표·기준, 조례 등이 시도별로 상이하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증가, 낙인 효과 등 우려
 -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느린학습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 제정 법률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 및 중복 지원 우려
- (일부수정) 전남, 대전
- 느린학습자 대다수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성격장애, 정서·행동문제,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필요

나) 맞춤형교육

- ☐ 제정안은 “맞춤형교육”을 느린학습자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학습지원교육”과 유사한 구조로, 지원대상에

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임.

[입법례 -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5조는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느린학습자의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

제 정 안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는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⁵⁾.
-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 등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이미 포함되

25) 일반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 따라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될 경우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중복되어 현장의 혼선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 된다는 입장으로,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느린학습자의 지원 과제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책 연속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에는 유사 계획과의 통합 수립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정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 (신중검토) 세종, 부산, 인천, 대구, 제주, 강원, 경남, 광주, 울산, 대전
- 느린학습자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지표·기준, 조례 등이 시도별로 상이하며,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증가, 낙인 효과 등 우려
 -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느린학습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 제정 법률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 및 중복 지원 우려
- (일부수정) 광주
- 느린학습자 대다수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성격장애, 정서·행동문제,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필요

다. 맞춤형교육 지원 및 담당교원(안 제6조,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학교장이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 맞춤형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제 정 안
제6조(맞춤형교육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교육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맞춤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느린학습자를 고려한 맞춤형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교

육 실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고려한 학습지원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실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과 유사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음.

[입법례 -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나, 담당교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여, 느린학습자가 포함된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므로, 별도의 교원을 지정할 경우 대상학생과 교육 지원 범위가 중복되어 현장의 혼선, 행정력 낭비 우려되므로 제정안에 맞춤형교육 담당 교원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통합 지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정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제6조]

(신증검토)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대전

- 학습지원대상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별도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신설은 중복 운영, 학교·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시도 교육청 경계선 학생 지원 조례에서 느린학습자 발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일부수정) 대전

-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분리교육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필요

[제7조]

(일부수정) 광주

-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 담당 교원의 추가 확보가 없을 때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교사 증원에 관한 조항 신설 필요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안 제8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8조는 ① 느린학습자 상담 및 진단·평가 지원, ②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지원, ③ 느린학습자 교육 관련 연구·분석, ④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⑤ 교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상담 및 진단·평가 지원 2.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지원 3. 느린학습자 교육 관련 연구·분석 4.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5. 교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 제8조는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시 사회적인 낙인 또는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느린 학습자 지원 관련 업무(위탁 업무 포함)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 제8조제3항은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교육감은 불포함 시 키고 있는데, 지원센터는 교육감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경비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현재 국가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에서 느린학습자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진단,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신설할 경우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국가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등과 통합하여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⁶⁾.

26)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와 별도로 운영할 경우 이중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입장임(광주, 대전).

마. 실태조사(안 제9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9조는 교육부장관이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느린학습자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는 실태조사 실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8조²⁷⁾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를 포함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 중복 및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합

27)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바²⁸⁾, 동 제정안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2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821

참고자료 1

과제별 소관기관

구분			주요 과제	소관기관
발굴강화 및 실태파악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감지	부모 대상 정보 제공	교육부
		발견	학령기 조기발견 체계 구축	교육부
		진단	경계선지능인 검사도구 개발	교육부 등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영유아기)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지원서비스 등 안내 강화	교육부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여가부 교육부
	(학령기) 학업 단계별 맞춤형 학습·상담·진로 지원		조기발견·정보연계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부
			마음건강 지원(Wee 프로젝트)	교육부
			3단계 안전망 등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부
			직업교육위탁교육과정 등 진로·직업 교육 지원	교육부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부
			자조모임 등 학부모 지원	지자체 등
			법교육 지원	법무부 교육부
			학교 밖 경계성지능인 지원	여가부 교육부
			취약아동 지원	복지부
	(성인기)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자체 등
			당사자·가족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공통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인식개선 노력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공통 지자체
	지역 내 협력체계 조성		생활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공통 지자체
	민·관협력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	공통 지자체

자료: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2024. 7. 3.)」, 범부처 합동

참고자료 2

경계선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서울	○	○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2),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21)
부산	○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12)
대구	○	○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4)
인천	○	○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6)
광주	○	○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4)
대전	○	○	대덕구, 동구(2), 서구, 유성구(4)
울산	○	○	울주군, 동구, 북구, 중구(4)
세종	○	○	
경기	○	○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연천군(25)
강원	○	○	강릉시, 원주시, 삼척시,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6)
충북	○	○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음성군(5)
충남	○	○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9)
전북	○	○	군산시, 전주시(2)
전남	×	×	광양시, 여주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5)
경북	○	○	안동시, 예천군(2)
경남	×	○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3)
제주	○	○	
합계	15	16	114

주: 1. '26년 1월 기준 자료임

2.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를 포함한 것임

3. 교육청의 경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 ○ 표시

자료: 교육부 자료²⁹⁾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9) 교육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2024), 17p